

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5년 8월 6일

고흥군의회 의장  류 제능

고흥군의회 훈령 제2025-18호

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일반인에게 공표하거나 CD 등으로 제작, 배부·보관하는 회의록”을 “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”를 “임시로”로 한다.

2. “배부회의록”이란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른 회의록을 말한다.

제5조 중 “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”을 “기재하는 전자회의록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고 전자회의록은”을 “전자회의록을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회의록 발간”을 “전자회의록 게재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배부회의록”이란 의장(위원장 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, 이하 같다)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·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“전자회의록”이란 회의내용을 전자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표하거나 CD 등으로 제작, 배부·보관하는 회의록을 말한다.</p> <p>5. “임시회의록”이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배부회의록”이란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른 회의록을 말한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-- ----- -----.</p> <p>5. ----- ----- 임 시로 -----</p>

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.

6. ~ 8. (생략)

제5조(행정사무감사·조사·특별위원회 회의록) 행정사무감사·조사·특별위원회 회의록은 행정사무감사·조사·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하며 작성 방법은 회의 규칙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규정을 적용한다.

제10조(자구의 정정) ① (생략)

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고 전자회의록은 정정하여 재등록하며 보존회의록도 정정하여 보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1조(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)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회의록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제하고자 할

-----.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행정사무감사·조사·특별위원회 회의록) -----

----- 기재하는 전자회의록 -----

-----.

제10조(자구의 정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전자회의록을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) ① ----- 전자회의록 게재 -----

-----.

때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회의록의 배부와 공표) ①

· ② (생략)

③ 회의록은 책자와 CD 등의 기록매체를 이용 발간, 제작하여 의원 및 각 유관기관, 도서관 등에 배부한다. <중전 제1항에
서 이동 2024.8.23.>

④·⑤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회의록의 배부와 공표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④·⑤ (현행과 같음)